

마. 벌꿀의 수분, 전화당 등 규격 개정 [안 제5, 29, 29-7, 5)의 (1) 및 (4)]

- (1) 벌꿀의 주밀원 및 사양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벌꿀규격 개정 필요
- (2) 벌꿀 중 수분 및 전화당 규격 개정
- (3) 벌꿀 규격의 현실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통상마찰 해소

바. 미량영양성분 중 엽산, 콜린, 비오틴에 대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용한 시험법 신설 [안 제10, 11, 2), (13)~(15)]

- (1) 엽산, 콜린, 비오틴 분석을 위해 정확성과 정밀성이 좋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시험법 마련
- (2) 엽산, 콜린, 비오틴에 대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용한 시험법 신설
- (3) 미량영양성분에 대한 시험법 개선

사. 동물용의약품인 락토파민과 초산멜렌게스트롤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[안 제10, 15, 3), (2)의 및 ⑤, 안 [별표 7]의 (85) 및 (86)]

- (1)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 승인되어 있으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마련
- (2) 락토파민과 초산멜렌게스트롤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이에 따른 시험법 신설
- (3) 잔류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『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』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84호, 2009. 7. 6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납,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, 잔류용매, 불소화물, 비술포화방향족제1급아민 등 유해물질과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을 신설강화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5'-구아닐산이나트륨 등 80 품목의 성분규격 제·개정

- (1) 납, 카드뮴,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(Ⅱ. 제3. 가. 15, 16, 17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43, 46, 50, 51, 53, 54, 55, 56,

- 60, 64, 73, 84, 85, 87, 90, 92, 93, 94, 95, 96, 97, 102, 104, 105, 107, 110, 111, 113, 114, 115, 121, 122, 123, 124, 125, 126, 127, 128, 129, 130, 131, 132, 133, 134, 135, 136, 138, 144, 145, 148, 149, 150, 151, 152, 153, 154, 156, 157, 159, 160, 161, 166, 167, 168, 169, 170, 171, 182)
- (2) 원료 또는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, 잔류용매, 불소화물, 수단 등 유해물질 규격 신설(II. 제3. 가. 21, 55, 84, 85, 110, 121, 123, 128, 130, 132, 134, 171)
- (3) 세균수, 대장균, 살모넬라, 진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(II. 제3. 가. 156, 157)
- (4) 성분규격 개정을 통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

나. L-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'MSG' 삭제

- (1) 조미료의 통칭으로 오인될 수 있는 'MSG'를 삭제(II. 제3. 가. 25)
- (2)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방지

다. 구연산삼나트륨의 정의 개정

- (1) 구연산삼나트륨 5수염을 정의에 추가(II. 제3. 가. 17)

라. 일반시험법 중 일부 개정

- (1)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시험법 개정(IV. 32)
- (2) 색소레이크시험법의 중금속 및 바륨 시험법 개정(IV. 33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식품등 이물 보고의 기준·대상·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88호, 2009. 7. 10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식품중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한 영업자는 그 내용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식품 이물 보고의 기준·대상·절차 및 조사 규정을 마련하고자 식품등 이물 보고의 기준·대상·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